

제1차산업경제위원회

2019.7.9.(화) 16:00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문석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박우양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9년 6월 24일

나. 회부일자 : 2019년 7월 3일

3. 제안 이유

-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정부조직의 명칭 변경에 따라 조직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개정(안 제2조)

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안 제3조)

다. 정부조직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8조, 안 제13조, 안 제18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정부조직의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도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